

## 안양시 시기 조례

제정 1977. 3. 26 조례 제 236호  
일부개정 2009. 5. 19 조례 제215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안양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양시기) ① 시기의 규격은 「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」 제7조를 준용하고,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② 시기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각종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.

③ 시기의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.

제3조(문장)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,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
② 문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·표창장 또는 공무원증
2. 시장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·인가·면허 등 증명서, 시 공공시설 또는 시 관리물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·시설 또는 물자 등

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기제작 사용중인 시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84. 2. 14 조례 제6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5. 19 조례 제215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기의 모양 (제2조 관련)



바탕은 청색(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지정색인 안양블루 색상)

글자는 흰색

원형은 흰색

원형의 크기는 깃면의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

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2분의 1로 하며, 모양은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심볼

마크의 작도법 적용

[별표 2]

문장(제3조 관련)



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지정색인 안양블루 색상을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색상을 달리할 수 있음.

